법인이 계약한 종신보험 비용처리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근거한 비용처리 방법 -

법인계약은 계약자 • 수익자를 법인,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저축성보험 또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고 또는 해지시 자산처리한 부분과 수령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방법과 매년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비용처리하는 방법 중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따른 종신보험료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1. 질의내용]

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부분과 사업비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습니다. (중략)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소멸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 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08-009, 2008.02.26



종신보험 비용처리 방법

법인계약 체결				
계약자	법인	<u> </u>	사업비	 손금산입
피보험자	임직원	3	적립순보험료	자산처리
수익자	법인		총 납입보험료	

[회계기준원 해석에 근거한 종신보험 회계처리]



회계기준원 해석에 근거한 종신보험 회계처리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	적립순보험료	사업비	자산계상보험료	비용처리보험료
1년	6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2년	12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3년	18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4년	24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5년	30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6년	36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7년	420,000,000	42,000,000	18,000,000	42,000,000	18,000,000
8년	480,000,000	42,000,000	18,000,000	42,000,000	18,000,000
9년	540,000,000	42,000,000	18,000,000	42,000,000	18,000,000
10년	600,000,000	42,000,000	18,000,000	42,000,000	18,000,000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사업비 안내서 요청

법인이 회계기준원 해석에 근거한 종신보험회계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말 해당 보험사에 사업비 안내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비용처리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앞서 법인이 특정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품의서, 복리후생규정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약을 함께 부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자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바,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